

콩나물의

農藥汚染

李瑞來 /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한국환경농학회 부회장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콩나물의 農藥오염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고 사회문제화되어 規制당국에 대한 건의와 아울러 법정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따라서 그 문제의 背景과 아울러 解決 대책을 언급하고자 한다.

保社部는 1988년 1월부터 11개 市道와 함께 전국 851곳의 시장,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콩나물을 收去하여 농약성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시료의 22%인 184곳의 콩나물에서 호마이, 켈탄, 비타지람 등의 殺菌劑와 기타 약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었다. 이에 따라 檢査당국은 서울지역에서 農藥이 檢出된 55개소의 콩나물중 그 농도가 1ppm 이상인 15개업소를 3월 7일자로 입건하였다고 한다. 입건된 업소의 콩나물에는 1.1~8.7ppm의 농약성분이 함유되어 국제적 잔류기준의 10~90배나 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도되어 콩나물을 常用하는 많은 시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보도에 따라 市中에서는 몸체가 통통하고 매끈하며 진뿌리가없는 콩나물은 公害식품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安全한 콩나물로 인정되어 콩나물의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리하여 콩나물의 需要가 60~70%나 감소하여 남아도는 콩나물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珍風景이 나타났고 많은 콩나물 공장이 조업을 단축하게 되었다. 과연 콩나물의 농약오염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각 분야 전문가의 衆智를 모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콩나물 재배중에는 미생물에 오염되기 쉽고 특히 따뜻한 계절에 대량 생산을 꾀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다. 그리하여 콩나물의 대량생산에서 殺菌劑를 사용코자 시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

연한 생각이다. 초기에는 농업생산에서 수십년 동안 중자소독약으로 사용되어온 有機水銀劑를 콩나물 재배에 몰래 사용하여 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와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이 세계적으로 문제시되면서 1978년부터 유기수은제의 생산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에 이르렀고, 1981년에는 콩나물중 수은 함량에 대한 기준을 0.1ppm이하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후 유기수은제를 代替하는 중자소독약으로 “호마이”라는 상표의 carbamate계 농약(유효성분은 thiophanate-methyl 50%, thiram 30%임)이 곧 개발되어 농업생산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콩나물 재배업자들이 이 농약을 다시 남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아울러 토양소독약인 켈탄과 중자소독약인 비타지람이 살균효과가 있어 함께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농약은 관례적인 농업생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것들이고 콩나물 재배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다른 식물의 성장촉진약인 인돌비(유효성분은 indole acetic acid 0.3%, benyle adenine 0.2%)는 콩나물의 잔뿌리를 없애주고 몸체를 통통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홀몬으로서 1982년부터 그의 사용이 허가되었다. 이 약품이 허가되기까지는 농림수산부와 보건사회부간에 「콩나물이 農作物이나 食品이나」 그리고 「콩나물 재배가 農生産인가 食品加工인가」에 대한 논쟁이 수년간 계속된 연후에 비로소 타협이 이루어져 인돌비를 農藥으로 규정하고 농약관리법으로 규제하게 된 것이다.

식품위생법(제 3조)에는 유독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거나 부차된 식품 또는 添加物을 제조·판매하지 못하게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식품중 有害·汚染물질에 대한 殘留基準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식품중 殘留農藥의 기준이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환경보전법(제 42조)에서는 농작물중 農藥殘留 許容基準을 설정하여 잔류성

농약으로 인한 인체위해를 예방코자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농약관리법(제 6, 18조)에서는 有毒性 및 殘留性 농약에 대하여 농약사용 측면에서의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콩나물의 농약 사용문제는 1986년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발생하여 콩나물 재배업자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본인은 그때 서울형사지방법원에 證人으로 나가 호마이 농약성분의 有害性 판정을 위한 근거를 제시한 적이 있다. 불행하게도 그때는 검출된 농약성분에 대한 殘留基準이 하나도 없었고 국제기구에서 제정한 ADI(인체허용 1일 섭취량)에 근거하여 이론적 계산만으로 有害性 여부를 추정하였다.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여 콩나물의 有害性 논쟁이 재연되고 있으니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사건에서 구속된 사람들의 법적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문제이거나 規制當局의 업무한계도 분명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콩나물의 대량생산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약품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콩나물의 汚染문제가 대두되자 직접 콩나물을 기르는 가정과 콩나물 자동재배기를 이용하는 주부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런가하면 다른 한편으로 무공해 콩나물이라 하여 백화점이나 건강식품 애호가들 사이에서 그들의 안전성이 보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싸게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산업사회의 轉換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흔히 겪게 되는 식품공해로서 자칫 잘못하면 문명의 이기를 저버리고 옛날로 되돌아가려는 움직임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고비를 합리적이고도 현명하게 넘겨야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현대화를 하루속히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